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16일, 소병훈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원회의(2026. 4.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2026. 4. 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소병훈의원)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로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교육 및 자문,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서비스 수준 평가 지원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센터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들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하여 규정하는 한편,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임.

다만,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

육'의 경우,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한정적인 인적·물적 자원을 주요 업무에 집중시키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의 경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305)을 통하여 신설되는 사회복지교부세의 교부기준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평가 가능성 및 객관성·공정성 확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기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체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면서,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시토록 함(제39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46조제1항제6호의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 제39조를 인용하도록 하면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가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6호). 한편,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함(안 부칙).

수정주요내용

-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시토록 함(제39조제1항 및 제2항).
- 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가 수행할 업무로 제39조에 따른

지역사회의 보장 수준 평가와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함(안 제46조 제1항제6호).

다.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조정함(안 부칙).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를 “지역사회보장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도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결과는 공시하여야 한다.

안 제4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39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공시
안 부칙 중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9조(<u>지역사회보장계획</u> <u>시행결과의 평가</u>)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u>지역사회보장계획의</u> <u>시행결과</u> 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u>지역사회보장계획의</u> <u>시행결과</u> 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39조(지역사회보장계획 <u>시행결과의 평가</u>) ① ----- ----- ----- ----- ----- ----- -----.	제39조(<u>지역사회보장평가</u>)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u>지역사회보장의 수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의</u> <u>시행결과</u> 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u>지역사회보장의 수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의</u> <u>시행결과</u> 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u>이를</u>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② ----- ----- ----- ----- ----- -----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u>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결과</u> 를 종합·검토하여 사

[illegible]

	<u>장의 균형발전 지원</u>	
<u><신 설></u>	<u>4.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u>	
<u><신 설></u>	<u>5.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u>	
<u><신 설></u>	<u>6.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u>	<u>6. 제39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공시</u>
<u><신 설></u>	<u>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u>7. (개정안과 같음)</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②·③ (개정안과 같음)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u>6개</u>	----- <u>1년</u>
	<u>월</u> 이 경과한 날부터	-----
	시행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 제목 중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를 “지역사회보장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도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결과는 공시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 중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을 “다음 각 호”로, “운영 할”을 “운영할”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

3.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4. 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자문
5. 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시
7.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u>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u>)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u>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u>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u>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u>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검토하여 <u>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③ (생략) 제46조(<u>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u>)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및 시·군·구의 <u>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 지역사</u>	제39조(<u>지역사회보장 평가</u>)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 <u>지역사회보장의 수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u>를, 시·도지사는 시·군·구 <u>지역사회보장의 수준 및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u>를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u>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결과</u>를 종합·검토하여 <u>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보장의 수준 평가 결과는 공시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u>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u>) ① ----- <u>다음 각 호</u>----- -----

<u>회보장계획의 평가, 지역 간</u> <u>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u> 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 전지원센터를 설치·<u>운영</u> 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③ (생 략)	----- ----- ----- ----- -----<u>운영할</u>----- -----. 1. <u>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u> <u>석</u> 2. <u>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u> 3. <u>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u> <u>전 지원</u> 4. <u>지역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u> <u>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에</u> <u>대한 교육 및 자문</u> 5. <u>지역사회보장의 우수사례 발</u> <u>굴 및 확산</u> 6. <u>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u> <u>회보장의 수준 평가 및 같은</u> <u>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시</u> 7. <u>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u> <u>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보건</u> <u>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③ (현행과 같음)
---	---